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43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삼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redacte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4. [redacted]법원[redacted]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별지1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5. 6. 2. 매각대금 4,706,000,000원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부분 취득세 246,365,720원, 농어촌특별세 10,484,380원, 지방교육세 20,968,770원 합계 277,818,870원(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주택부분 취득세 1,628,960원, 지방교육세 138,630원(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합계 1,767,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9. 원고의 위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23.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제①주장).

1) 원고는 2015. 11. 16.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던 E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인삼제품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6. 3. 8.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1/4 가량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하던 G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인삼제품의 진열 및 포장재 보관장소로 사용하면서 피고로부터 담배 판매소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건물 1층 중 3/4 가량에서 H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일부는 인삼제품의 판매장으로, 나머지는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인근 원고의 기존 본점건물 주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인이 여럿 존재하였고,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건물 1층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던 H이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인도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제②주장).

다.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조사하여 추징을 할 때까지의 기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제③주장).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1) 법 제14조 제3항은 [redacte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 및 제8호는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10, 12, 13, 19, 2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5. 6. 2.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인도받는 즉시 이를 인삼제품의 보관 및 판매, 진열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할 뿐 이를 위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2016. 3. 8.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담배소매업이 원고의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 담배소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2016. 1. 28.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본점의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결의하고 2016. 5. 12. 그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기존 본점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2016. 5. 23.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대부분에 할인마트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부분은 위 할인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부분에 원고가 이를 본점건물의 주차장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할만한 관리인, 관리시설이나 표지 등을 볼 수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이어 그 층수변경, 구조변경 등의 대규모 증축공사를 예정하여 실제 2016. 4. 11. 건축허가를 받아 2016. 9. 2.경 착공을 하는 등으로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기존 사업장 및 판매장이 2017년경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내지 9, 11, 14, 15, 16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15인의 임차인과 8인의 유치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임차인 E, G, I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3.까지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29. 유치권자들 중 4명과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6. 4. 7. 나머지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 1층 중 대부분을 할인마트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7.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16. 1. 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5. 3.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H이 2016. 5.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용하는 부분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16. 5. 23.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해당 부분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축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 6. 3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8. 26.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 및 기초 보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6. 9. 2. 철거 및 기초 보강공사를 착공하고 2016. 12. 27. 이를 완공하였으며, 2017. 2. 1.부터 주식회사 K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17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 그러나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임차인과 유치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여 원고는 미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5. 6. 2.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 30.에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2016. 9. 2. 건물증축에 관한 기초공사를 착공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H가 인도를 지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8. 17.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집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더욱이 위 인용결정이 2016. 1. 7.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주식회사 H과 2016. 5. 23.까지 인도기한을 늦춰주면서 이행각서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 제17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③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신청에 따른 것일 뿐 이에 관하여 피고가 조사나 공적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원고가 감면신청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득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363㎡

2.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1262㎡

3.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전 113㎡

4.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 [redacted] 위 지상
(현황 [redacted], [redacted], [redacted])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78.12㎡
2층 78.12㎡
제시외 4-1 보일러실 벽체이용벽돌조 1층소재 1.68㎡
4-2 계단실 등 벽돌조 슬래브지붕 옥상 소재 12.5㎡

5.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대 88㎡

6.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전 70㎡

7.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전 615㎡

8.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1동호, [redacted] 위 지상
1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1층 953.96㎡
2층 953.96㎡
제시외 8-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496.35㎡
8-2 창고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1층소재 56.2㎡
8-3 현관로비 샷시조 1층소재 4.2㎡
8-4 물탱크실 철골조 옥탑소재 54㎡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redacted]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redacted]조합중앙회, [redacted]조합중앙회, [redacted]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redacted]조합중앙회, [redacted]조합중앙회, [redacted]조합중앙회, [redacted]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농[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redacted]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redacted]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농[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redacte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redacted]조합 및 [redacted]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